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
----------	----

2018년 9월 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8년 9월 4일 상정, 원안가결)

## 2. 동의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재난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분야에 특화된 서울기술연구원을 '18년 신설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전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 관련법령 및 조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출연의 필요성

-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분야 연구 기능수행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필요
- 서울시 각 부서의 기술분야 연구과제 선정 등 서울시 기술분야 연구총괄 추진
-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기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비해 시민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연구원의 독립성 강화, 장기적 발전 및 기술분야 연구영역 확장 등 기술분야 연구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 ◇ 주요사업

- 재난 예방 및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 조사·연구
- 도시개발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 조사·연구
- 물 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조사·연구
-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및 평가
-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의 규정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 출연금을 2019회계연도 서울시(이하 "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 위 치 :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8층(상암동)
- 설 립 일 : 2018. 3. 27.(설립등기일)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목적 :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조례 제1조)
- 연구분야(조례 제4조)
  - 재난(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 예방 및 대비
  - 도시기반시설(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 건설 및 유지관리
  - 물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분야 연구 등
  -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출자·출연에 따른 의회 사전의결제도 현황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 하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음.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sup>2)</sup>는 2015년 10월 관련 규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 해석(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15.10.16.)을 통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신규, 기존, 법정 모두 포함)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시는 이에 근거하여 각 실·본부·국별로 출자·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14개 출연기관에 대해 2018회계연도 출연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표] 참조), 2018년에도 동일 기관들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연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임.

[표] 2018 회계연도 출연동의(안) 의결현황

소관위원회	상정(안)	상정일자	의결일자	대상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2017.8.31	2017.9.6	⑧ 서울시복지재단 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인생이모작지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2017.8.31	2017.9.6	⑩ 세종문화회관 ⑪ 서울문화재단 ⑫ 서울시립교향악단 ⑬ 서울디자인재단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11.21	2017.12.15	⑭ 서울기술연구원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이처럼 출자·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2) 과거 행정자치부였으나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함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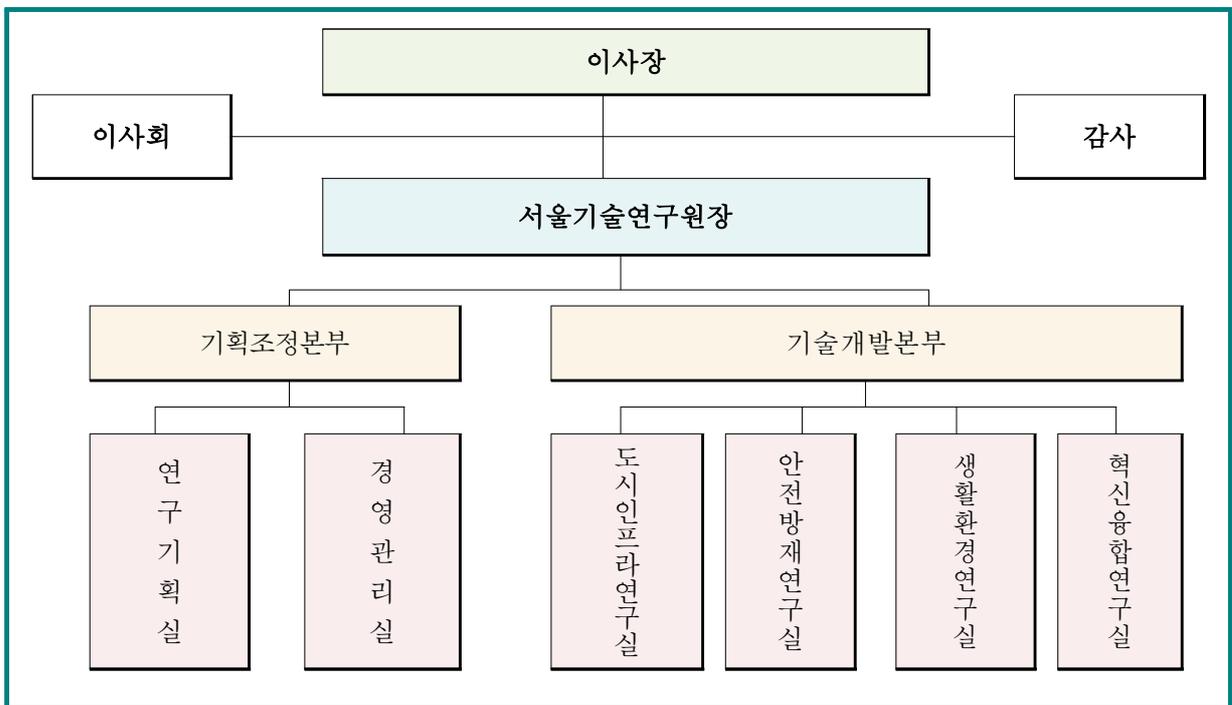
- 또한,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부적정한 예산 출연에 대해 사전적 통제를 위한 조치로도 이해됨.
- 그러나 이러한 의회 사전동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 타당성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출연을 의회가 거부할 경우 출연기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측면에서는 사전 동의제도가 옥상옥에 불과할 수도 있음.

#### ■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타당성 측면

- 연구원은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전담할 목적으로 금년 3월 27일 법인 설립하였으며,
- 정원 52명에 2본부 6실의 조직(안)을 구성하여 기획조정본부 아래 연구기획실과 경영관리실을 두고, 기술개발본부 아래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혁신융합연구실을 두어 운영할 계획임([표] 및 [조직도] 참조).

[표] 직급별 정원 현황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관리 운영직
			소계	선임 연구위원	연구 위원	수석 연구원	전임 연구원	소계	선임 위원급	위원급	수석급	전임급	
정원	52	1	41	5	16	14	6	8	1	2	3	2	2



[조직도]

- 연구분야는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당면 도시문제인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물순환 및 하천관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폭염,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도시문제 해결 또는 도시경쟁력 강화까지 확대할 계획임([표] 참조).

[표]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구 분	분 야	추진 계획
도시인프라	도로 교량 지반 수공	① 도로인프라 신재료, 신공법 연구개발 ② 인프라 구조물 보수·보강,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③ 지반구조물 안전성, 방재성, 친환경성 향상 ④ 수자원 통합관리, 물관리 일원화
방재·안전	기상안전 수방안전 사회안전	① 기상안전 예측, 대응, 완화기술 ② 수방재난 예측 및 저감기술 ③ 사회안전(지진, 도로합몰 등) 예측, 대응 및 복구 ④ 사회안전 정책, 제도 정비
혁신융합	지능정보시스템 미래첨단기술융합	① 도시인프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② 지능형 IoT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예측·대응 분야 ③ 자율주행·지능형 교통·신교통기술 융합·응용 분야 ④ 에너지, 교통정보 등 시민체감 데이터 공유
시민생활환경	친환경건축 생활환경	① 재건축·리모델링, 유지관리 등 친환경 재생 분야 ② 건축물 내진·내화, 해체 등 안전 분야 ③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분야 ④ 새집증후군, 환경호르몬 등 실내환경 분야

- 따라서 연구원의 비전, 조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설정되고 구성되었다 여겨지나,
- 8월 현재 연구원의 수장인 원장이 아직 공석인 상태이며, 현재 시 파견공무원인 기획단장(서기관)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력 ([표] 참조)이 개원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속한 개원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개원 준비 인력 현황('18.8월 기준)

계	단장(파견)	연구직(5)		행정직(5)		
		팀장	연구원	팀장(파견)	일반직	주무관(파견)
11	1	1	4	1	2	2

※ 파견공무원 : 4명(기술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이하 2)

## ▣ 출연금의 적정성 측면

- 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분야 연구 기능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개원 첫 해인 2018회계연도 총 수입액은 66억 89백만원으로 이는 출연금 66억 77백만원과 출연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 1,200만원을 포함한 것이며,
- ‘18.8월말 기준 전체 집행률은 19%로 저조하나, 이는 아직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 지연 등 연구원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임.

[표] 재정운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지출(‘18.8.23 현재)		지출(‘18.12월말 추정)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계	6,689,083	1,286,832	19%	5,415,000	81%
자본금	500,000	500,000	100%	500,000	100%

인건비	2,160,914	158,228	7%	1,228,000	57%
경상경비	2,178,169	628,604	29%	1,837,000	84%
사업비	1,850,000	-	0%	1,850,000	100%

※사업비 : '18년 게시 사업의 과업기간이 '19년 중 종료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18년말 지출예상액을 전액 지출로 표기

- 한편, 2019회계연도 총 출연금(안)은 114억 83백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38억원을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는데([표] 참조), 전회(2018회계연도) 사업비가 18억 5천 만원이었으나 8월 기준 아직 원인행위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다음 회계까지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표] 2019년 사업계획(안)

사 업 명		예산액(천원)
합 계 (5개분야 23개사업)		3,800,000
① 도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8개 사업)		1,250,000
	(계속) 빗물마을 조성 지역 효과 분석 및 적정지역 선정기준 마련 연구(2차)	150,000
	(계속) 투수포장 성능개선을 위한 공극 확보 장비개발 및 회복방안 연구(2차)	300,000
	(신규) 고밀도 도시에 적합한 물수지 분석과 장기적인 지하수위 관리 방안 연구	200,000
	(계속) 교량 등 도로시설물 포장 유지관리 지침 개발(2차)	250,000
	(계속) BIM 기반 도로시설물(교량 포함) 유지관리 방안 연구(2차)	200,000
	(신규) 굴착복구 공사시 임시포장에 대한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80,000
	(계속)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2차)	50,000
	(신규) 서울시 건설생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획 연구(보도 시공수준을 중심으로)	70,000
②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연구(5개 사업)		950,000
	(신규) 지진방재 행동역량 강화방안 연구	100,000
	(신규) 사면전수조사 토석류 분석을 통한 산사태 위험지구 분석연구	100,000
	(신규) 실험기반 하수관거 통수특성 평가 및 성능개선 연구	300,000
	(신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150,000

	(계속) 통합물관리(치수, 이수, 수질) 분석 시스템 개발(2차)	300,000
③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7개 사업)		950,000
	(신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구조기술 개발 (1차)	150,000
	(신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연구 (1차)	200,000
	(신규) 건축물 굴토공사 안전관리 제고방안 마련	20,000
	(신규) 3중시설물(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1차)	50,000
	(신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및 성능 향상 방안 연구(1차)	50,000
	(신규) 대기 측정용 간이 미세먼지 (PM2.5,PM10) 측정모듈 국산화 개발(1차)	300,000
	(신규) 서울시 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차)	180,000
④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혁신·융합 연구(2개 사업)		500,000
	(계속) 태양광 도로포장(Solar Road) 적용, 검증 및 타당성 연구(2차)	300,000
	(신규)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의 스마트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구축 연구	200,000
⑤ 민간 혁신기술 발굴 및 실용화 방안 연구(1개 사업)		150,000
	(계속) 혁신기술 제안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2차)	150,000

\* (계속) : '18년 계속사업, (신규) : '19년 신규사업

- 만일 2019회계연도 사업에 2018회계연도 사업까지 합해질 경우 총 56억 5천만원(18억 5천만원('18)+38억원('19))에 해당하는 사업을 차년도에 추진해야 하는바, 당해연도 내에 이들 사업의 실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됨.
- 참고로, 「'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2018.7.)」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출연금을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음.

## ▣ 종합의견

- 연구원의 비전 및 추진전략, 2019회계연도 주요 연구분야 및 사업계획과 그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다 여겨지는바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원장을 비롯한 연구인력 및 행정인력 확보가 미진하여 현재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원장 및 임원 선임, 그리고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개월을 통해 연구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시는 출연금 출연이후에도 해당 출연기관의 이사회 참여 및 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 수행요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출연기관으로서 시의 역할과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연구원의 운영 성과 도출은 언제 가능한지?(문장길 위원)

답변) 올해 말 연구인력 확보 후 본격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이며, 연구수행 결과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질의)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개원식 소요예산이 7천만원인데, 일회성 행사에 과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아닌지?(정진술 위원)

답변) 개원식 행사는 아직 계획단계로 구체적인 소요내역에 대한 것이 아니며, 개원식이 구체화되면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음.(정제호 서울기술연구원 운영기획단장)

질의) 서울연구원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 규모 확대 필요함.(전석기 위원)

답변) 단계적인 연구분야 확대와 더불어 인력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00명을 확보할 예정임.(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 **6. 토론요지 : 없음**

##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83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재난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분야에 특화된 서울기술연구원을 '18년 신설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전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2) 관련법령 및 조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출연의 필요성

1)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분야 연구 기능수행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필요

2) 서울시 각 부서의 기술분야 연구과제 선정 등 서울시 기술분야 연구총괄 추진

- 3)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기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비해 시민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4) 연구원의 독립성 강화, 장기적 발전 및 기술분야 연구영역 확장 등 기술분야 연구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다. 주요 사업

- 1) 재난 예방 및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 조사·연구
- 2) 도시개발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 조사·연구
- 3) 물 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조사·연구
- 4)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및 평가
- 5)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안전총괄과 사회안전팀 황동연 (☎ 2133-8146 )